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[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/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/보험급여팀장 백영기[6581]/팀원 박수연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0021호

시행일자 2018. 4. 2.

수 신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 
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65호(2018.3.30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4호, 2018. 2. 5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내용

- 약국의 명세서 일반내역 신설 및 변경
- 특정내역 삭제 및 변경

나. 시행일 : 2018.4.1.부터

붙임 : 복지부 고시 개정안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